비즈온방배센터					
이용계약서					
갑	대표자	전 진 욱	사업자번호	164-30-00349	
	전화번호	02-2138-5004	이 메일	bizbb@thebizlife.co.kr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21, 4층 (방배동)			
oļn	성 명	이 태 경제왕9개8	예치금 환불 계좌	국민은행 084001-04-185768	
	업체 명	종합유통78	E-mail	mn9802@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827-18-00899	주민등 록 번호	720308-2017211	
	업 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연 락 처	이태경 010-3062-3868 박태삼 010-5279-3868	
	거주지주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극동 108-1408			
	이 용 기 간	2020년 7월 27일	~ 2021년	년 7월 26일 (12개월)	
	이 용 범 위	HI3	비즈온 이용안내서 참조		
좌석 유형 계 약 형 태 (VAT 별도)		☑ 비상주 - 개인 (₩100,000) □ 비상주 - 법인 (₩150,000)	□ 택스프리미 □ 택스오피스	엄 - 개인(₩150,000) 엄 - 법인(₩200,000) - 개인(₩200,000) - 법인(₩250,000)	
부가서비스 (VAT 별도)			락커사용 여부/번호	ㅁ 락커비 - (₩5,000)	
계약담당자		비즈온 방배센터 담당 매니저			
	확 정 월 회 비 (납부일: 매월 26일)			납 부 안 내	
	₩110,000(VAT포함)			KEB하나은행	
	예 치 금			비즈온방배센터	
	₩220,000			179-910314-89307	
필 수 사 항		□ 비즈라이프 멤버스 회원가입(무료) ※ 비즈라이프 멤버스란? 비즈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사이버/택스프리미엄사무실형 제외, 멤버십 이용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드 일 련 번 호	카 드 일 련 번 호 해당사항 없음		
1. 본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계약기간 만료 포함)는 퇴실하고자 하는 날짜 1 개월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퇴실 고지한 다음날부터 1개월 후까지 이용 요금이 청구(퇴실 고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됨).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종료시 퇴실 예정일 전에 전화 이전, 사업자등록증 주소 (법인 등기주소 포함) 이전 확인서 또는 폐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주소 변경 서류가 확인될 때까지 이용요금이 청구된다. 3. 계약기간 중 퇴실시 예치금, 할인금 반환조항 참조(이용계약서 제3조, 제7조) 기본 계약 기간(비상주 3개월, 택스프리미엄/택스오피스 6개월) 이내 퇴실시 예치금 반환 없음					



확 인 사 항	- 월회비 할인율 및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을'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 할인받은 총금액, 프로모션 지원금 등을 최종 정산시 '갑'에게 일괄 반환한다. 4. 영수증 :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제출. 지출증빙/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가능 5. 본 이용계약서로는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할 수 없으며, '갑(비즈온)'의 주소를 '을'의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6. 1개월 이상 미납 시 모든 서비스(우편물 수발신, 센터 이용 등)가 중단된다. 7. 주소 변경 미고지 등 을의 과실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반송료 청구되며, 센터 보관중인 우편물(택배) 미수령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시 비즈온은 책임지지 않는다. 8. 갑이 을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폐업)여부를 조회하는 데 동의한다. ●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함. (기관) 〉
	* 대표자 6 년에 는 본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한 달 후가 퇴실예정일이 되어 한 달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가 됨을 확인하 였다. -> 한 달을 넘길 시 초과 일 수 요금 부과
※ 특 약 사 항	* 우편물 발송여부 체크 : 발송 □ 보관 □ 개봉 확인 후 카톡 발송(광고는 폐기) ☑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 시 필히 센터에 연락 요망, 우편물은 장기 보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달에 2회 보통우편물 취합하여 발송
	* 6개월 선납 부가세포함 55,000원, 예치금 없음

비즈온방배센터(이하 "갑")와 상기 회원(이하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을"이 이용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사항을 본 이용계약서 약관대로 체결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비상주 6개월회비 330,000원 통장 입금 함

2020년 7월 27일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BIZON 방배센터에 회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과 동시에 을이 필요로 하는 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갑-을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한다.

제2조 을의 권리와 책임

1) 갑은 을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갑의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

- 2) 을은 상기한 갑의 비즈온방배센터의 사무실 제공과 동시에 부대시설(회의실 등)을 갑이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을은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부대시설에 야기된 제반 손상이나 훼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 4) 을은 건물주 및 갑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 (6개월간의 월회비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배상을 한다.
- 5) 상기 제4항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관련 정보제공, 법적인 문제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 (또한, 채권 가압류의 경우 즉시항고,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포함한다.

제3조 예치금

- 1)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예치금 ₩ 220,000원 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납에 따라 할인 가능하므로 특약사항 확인)
- 2) 위 제1항에 명시된 예치금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보유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종료시 을이 갑에게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고, 갑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자 주소지와 전화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확인된 후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예치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치금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공제 후 반환하며, 기본 계약기간 내 퇴실시 예치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사이버회원 : 기본계약기간 3개월, 택스프리미엄 회원 : 기본계약기간 6개월, 택스오피스 회원 : 기본계약기간 12개월(프로모션 적용시 6개월). 퇴실을 고지한 다음날부터 1개월 후까지 이용료가 부과되며,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이전 서류 확인시까지 이용료가 부과된다.
- 3)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계약서에 예치금 환급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이용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회비 및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

- 1) 을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월회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해야 하다
- 2) 월회비나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권리와는 별도로 연체료 월 2%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월 회비나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멤버십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사무실 및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회 이상 월회비 미납시 '을'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할 수 있다.

제5조 갑의 면책사항

- 1) 본 계약서의 내용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갑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을에게 사전 고지하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갑은 본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을이나 제3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여하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배수관, 스프링쿨러, 연기 혹은 기타 물질이 건물에서 누출될 경우
- 건물의 서비스와 설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보안이나 보호
- 3)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세무전문서비스는 을과 갑의 제휴세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세무전문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의 양도 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갱신

- 1) 을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러한 의사를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 2) 을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이후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후를 계약만료일로 하여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 3) 1), 2)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 만료일까지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을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 2)항에 따른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제출 시까지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 4) 월회비 할인율 및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을'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 할인받은 총금액, 프로모션 지원금 등을 최종 정산시 일괄 반환한다.
- 5) "을"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만료기간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퇴실을 고지한 다음날부터 1개월 후까지 이용료가 부과되며,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이전 서류 확인시까지 이용료가 부과된다.
- 6)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을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을은 사업자주소지(법인등기주소 포함) 이전 등 퇴실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사업자주소지 이전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피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 "을"이 비즈온 사업장 주소지로 카드가맹을 낼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합의 후 진행하며, 가맹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만일 불미스런 사업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갑"은 상황에 따라 "을"의 카드가맹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8)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30일 이내 2회 이상 갑으로부터 납부 권고를 받고도 월 이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을'이 '갑'이 규정한 '회원이용안내'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갑'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
-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계약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 '을'의 업무가 반사회적이거나, 현행 법률에 저촉되어 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을'로 인해 '갑'과 '갑'의 이해당사자에게 법적인 문제(채권 가압류 등)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 1) 해지 3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월회비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산하고 을 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2) 을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의 유치물품을 퇴거해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을의 유치물품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본 계약서에 명시된 월회비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갑은 사무실 또는 건물에 있는 을의 자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담보권을 취득한다. 만일 을이 갑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자산을 이전 및 임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분쟁의 해결

- 1)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해당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에 의하여 상호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
- 2)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 이상과 같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며, 양 당사자는 본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각기 서명 날인하여 1부씩 이를 보관한다.



